

정관

학 교 법 인 운 석 학 원

학교법인 운석학원 정관

개정 1997.04.22.
1998.12.07.
2001.04.01.
2001.04.24.
2004.02.27.
2005.04.22.
2007.12.20.
2012.05.24.
2012.05.24.
2013.07.29.
2015.02.16.
2016.08.29.
2017.12.27.
2019.04.23.
2021.08.25.
2021.12.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외국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운석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2.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6”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 제6조(자산의 구조)**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 증여 · 교환 또는 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다음 해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예산결산자문위원회 설치) 삭제 (개정 2007. . .)

제14조(위원회의 조직) 삭제 (개정 2007. . .)

제1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개정 2007. . .)

제16조(회의) 삭제 (개정 2007. . .)

제17조(위원회의 간사등) 삭제 (개정 2007. . .)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 7인(이사장 1인 포함)
- ②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 1. 이사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2. 감사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여부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

-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①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로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자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장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회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의2(이사회의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

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32조(수입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금전신탁(현금)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금전신탁을 경영한다.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전조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6”에 둔다.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에 대한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판 임 용

제39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임용” 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39조의2(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2. 「사립학교법」에 의거 기간제교원(교장 제외)의 신속한 임용을 위하여 학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제39조의3(교원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교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39조의4(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9조의5(의원면직의 제한)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55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 검찰 ·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교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를 준용한다.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에의 고용기간은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제40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입양 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 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0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제40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한다.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게는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감액 기준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면직의 사유)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幫助)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

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의2(당연퇴직)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의2(명예퇴직) 명예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46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교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추천한 자 중 7인의 교원(학교장 제외)을 학교의 장이 임명하여 조직한다.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인사위원회 위원장)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 내용 중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는 회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2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은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5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 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8조(재적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진상조사 및 요구사유 통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③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교원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관할 청은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 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1조(징계의결 시의 정상참작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3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64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5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제정이 있어야 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정이 있

어야 한다.

- ④ 일반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한다.

제65조의2(명예퇴직) ① 사무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신청절차, 신청서류, 신청시기, 수당지급 등 기타 필요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 시행 지침」에 따른다.

제65조의3(윤리규범) 교직원의 윤리규범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65조의4(당연퇴직) 사무직원이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66조(준용사항)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단, 학교법인의 근속승진제 운영, 대우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66조의2(장기재직휴가) 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5조 제12항에 의거, 10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제66조의3(공로연수) ① 사무직원으로서 법인 내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희망하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 공로연수와 관련하여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67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

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인

제70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등학교

제71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제72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정 원

제73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74조(목적) 이 8장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

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5조(위원회 설치 범위 및 해산) ① 병설학교는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76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원(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사항
 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②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전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전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77조(위원회의 선출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 ·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위원정수의 2배수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

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⑧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한다.

② 교원 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③ 지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2.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4. 본교를 졸업한 자
5.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④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자격에 관한 사항 및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어서는 아니된다.

제81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운영규정 제9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8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3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4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구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7조(안건의 제출·발의) ①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88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9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학교内外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内外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91조의2(학부모회) ① 학부모회는 각 학교별로 설치되며, 세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2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93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94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는 영 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95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당해 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 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경기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 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97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교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9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0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1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2조(심위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 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 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3조(간사)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04조(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정관 중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추천위원회

제106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가.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2인

 나. 안양외국어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6조의2(개방이사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대상 인원의 2배 수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1.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2. 후보자 학력 및 경력증명서

3. 후보자 동의서

4.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서

5.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최근 영업거래 내역서

②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중에서 2배수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 다만, 이 경우 추천 순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 11 장 보 칙

제107조(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조선일보 신문에 공고한다.

제10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9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유 영렬	1911.06.05.	4년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57-1
이사	오영선	1928.11.03.	2년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97번지 11통 3반
이사	이일성	1944.04.12.	2년	서울 관악구 사당5동 1000-7 상신아파트 7동 105호
이사	최광남	1945.02.11.	4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7 은마아파트 30동 1101호
이사	조만호	1953.04.23.	4년	서울 관악구 대방동 392-17
감사	임상순	1930.10.06.	2년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당리 1107
감사	송병기	1948.03.24.	2년	서울시 관악구 흑석동 79-204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학교일반직 직원 1명 퇴직 시에는 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삭제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임기)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까지로 한다.
- (최초의 구성)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4월 24일부터 적용한다.
- 제9장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삽입.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0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4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7월 1일 이전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주소)는 2012.01.01부터 시행하며, <별표2>(학교 일반직원 정원)는 2012년 5월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인 일 반 직 정 원

총 계 7 명

일 반 직 계 4 명

4급(참사) 1 명

5급(부참사) 1 명

8급(서기) 1 명

9급(부서기) 1 명

기 능 직 계 3 명

6 등 급 계 2 명

운전원 1 명

건축장 1 명

10등급계 1 명

사무보조원 1 명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 직명은 이 직급표에 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별표 2]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사무직원 정원

직 종	직 군	직 렐	직 급	인원수	비 고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5급	1명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6급	1명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7급	1명	
행정직군 소계					3명
일반직	관리운영	사무운영	9급	2명	
관리운영직군 소계					2명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	9급	1명	
기술직군 소계					1명
일반직 합계					6명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사무직원 정원

직 종	직 군	직 렐	직 급	인원수	비 고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4급	1명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5급	1명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6급	1명	
일반직	행정	교육행정	7급	1명	
행정직군 소계					4명
일반직	관리운영	사무운영	9급	1명	
관리운영직군 소계					1명
일반직	기술직	시설관리	9급	2명	
기술직군 소계					2명
일반직 합계					7명